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46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 강경숙・김준형・정춘생

김문수 · 김준혁 · 박은정

황운하 • 문정복 • 신장식

김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 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(2022년)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.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·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 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.

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·남용 여부를 확인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,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·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, 제11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질병의 유무"를 "질병의 유무,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 유무"로 한다.

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각 호"를 "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-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·남용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에 대한 약물의 오용·남용 관련 교육
- 2.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
- 3.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
- 4. 그 밖에 약물 오용ㆍ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건강검사"란 신체의 발달상 1. ------황 및 능력, 정신건강 상태, 생활습관, 질병의 유무 등에 -----질병의 유무, 마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 것을 말한다. (誤用)・남용(濫用) 유무----2. • 3. (생략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치료 및 예방조치 등) ① 제11조(치료 및 예방조치 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· ② (생 략) <신 설>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・남용 상 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 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에 대 한 약물의 오용・남용 관련 교육 2.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

- ③ 교육감은 검사비,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학교의 장은 <u>제1항 및 제2</u> 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 다.

3.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
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
4. 그 밖에 약물 오용·남용 문
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
<u>조치</u>
<u>4</u>
<u>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</u>
⑤제1항부터 제3
<u>항까지</u>